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

의안 번호	62

제출년월일 : 2026. 8. 26.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 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.

이에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

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1단계(2026~2028)		2단계(2029~2030)		3단계(2031~)		비 고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
근린공원(14)	2,747	9,370					진해구
도로(소로2-318)	765	2,905					마산회원구
도로(소로3-10)	9,140	3,600					마산회원구
합 계	12,652	15,875					

나. 시설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

1) 근린공원(14)

■ 추진부서 : 관광과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일 : 2026. 6. 30.(창원시 고시 제2026-177호)

■ 위　　치 :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850-6 일원

■ 수립사유

- 광역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내 체류관광 기반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
- (구)경화역 벚꽃철길 사계절 명소화, 관광활력 여건 조성으로 관광 거점화

■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　호	미집행규모 (㎡)	단계별 집행계획						비고
			1단계 (2026~2028)		2단계 (2029~2030)		3단계 (2031~)		
		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
신규	14	2,747	2,747	9,370	-	-	-	-	진해구

■ 관련도면



2) 소로2-318

■ 추진부서 :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일 : 2026. 7. 9.(창원시 고시 제2026-192호)

■ 위　　치 :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61-13번지 일원

■ 수립사유

- 도로배치 간격이 넓은 주택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신설

■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

구분	시설명				미집행 규모(m)		단계별 집행계획						비고
							1단계 (2026~2028)		2단계 (2029~2030)		3단계 (2031~)		
	지구명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
신규	마산 회원구	소로	2	318	8	93	765	2,905	-	-	-	-	마산 회원구

■ 관련도면



3) 소로3-10

■ 추진부서 :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일 : 2026. 7. 15.(창원시 고시 제2026-196호)

■ 위　　치 :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159번지 일원

■ 수립사유

- 기존 도로(폭3m)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워 인근 주민과 반야사 방문객들의 불편으로 지속적인 도로 개설 민원 제기
-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

■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

구분	시설명				미집행 규모(m)		단계별 집행계획						비고
							1단계 (2026~2028)		2단계 (2029~2030)		3단계 (2031~)		
	지구명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사업량 (㎡)	사업비 (백만원)	
변경	마산 회원구	소로	3	10	5~6	815	9,140	3,600	-	-	-	-	마산 회원구

■ 관련도면



3. 향후 추진계획

▢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: 2026. 9.

4. 관계법령 등

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○ 법 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법 시행령 제9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